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63호

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신규 수입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허용 축산물에 반영하고,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유가공품 정의 수정(안 제2조)

- 1)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
- 2) 유가공품의 정의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를 명확화

나.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(안 제5조)

- 1) 수출제품은 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수입위생요건으로는 요구하되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모든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
- 2)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
- 3)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방지

다.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(안 별표)

- 1)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, 가공유류, 유크림류와

체코산 우유류, 가공유류, 발효유류, 농축유류, 유크림류, 버터류,
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

2)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
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(1) 행정예고('18. 7. 30.~ 8. 20), WTO 회람
('18.8.2~8.20)

(2) 규제심사 : 비규제 확인(2018. 7. 24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63호

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7-111호, 2017. 12. 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22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(안)

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발효유류”를 “분유류, 발효유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출축산물(선적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

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(또는 지역) 축산물(제3조 관련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(또는 지역별)의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.

2. 원유 및 유가공품

나. 유가공품

국가 또는 지역	종류	비고
오스트리아	<u>가공유류</u> , 발효유류, 분유류, 유당, <u>우유류</u> , 유청류, <u>유크림류</u> , 조제유류, 치즈류	
체코공화국	<u>가공유류</u> , 농축유류, 발효유류, 버터류, 분유류, <u>아이스크림류</u> , <u>우유류</u> , 유청류, <u>유크림류</u> , 치즈류	

3. 식용란 및 알가공품

나. 알가공품

국가 또는 지역	종류	비고
네덜란드	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<u>난황액</u> 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덴마크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<u>난황액</u> 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독일	난백분, 난백액, 난황분, <u>난황액</u> , 알가열제품, 전란액, 전란분	
미국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분, <u>전란액</u> , <u>피단</u>	
이탈리아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난황액, 전란분, <u>전란액</u>	
캐나다	난백분, <u>난백액</u> , 난황분, 난황액, 알가열제품, 전란분, 전란액	

다. 알가공품(한시적 수입허용: 2018년 1월 13일까지)<삭제>

여야 한다.

1.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
준수여부

2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----- 제2호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